장영신 학생회관 운영준칙(안)

제1조 (목적) 이 준칙은 한국과학기술원 장영신 학생회관(이하 '신학생회관'이라 한다)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공간의 기능) 신학생회관의 일차적 기능은 학생활동지원에 있으며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학생의 자율적인 학생활동지원을 위한 단체실 제공
- 2. 학생의 문화·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 제공
- 3. 학생 복지를 위한 편의·교류 시설 제공
- 4. 기타 학교 문화공간으로서 기능

제3조 (공간의 구분) 신학생회관 내의 공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학생자치단체실: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(이하 '총학생회'라 한다) 및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특정 공간을 말한다.
- 2. 동아리방: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가 점유하는 특정 공간을 말한다.
- 3. 공용 공간: 학생이 임시로 대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.
- 4. 상업 공간: 신학생회관 내에서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.
- 5. 상담 센터: 신학생회관 3층의 상담 센터가 점유한 공간을 말한다.
- 6. 기타 부속 공간: 로비, 전시계단, 여가실 등과 같이 위 호에서 구분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.

제4조 (업무의 담당 부서) 신학생회관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별 업무소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서명	담당업무
시설팀	냉난방, 전기·조명시설 관리, 가구 관리, 청소·시설 관리
안전팀	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, 공용 공간 시건 관리
총무팀	신학생회관 내 상업 공간 관리
정보통신팀	미디어, 음향, 통신 설비 관리
경영정보팀	예약시스템 관리
학생지원팀	학생단체 및 학생활동 지원

제5조 (관리·운영의 위임)

① 총장은 신학생회관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학생회 산

하 자치단체인 학생문화공간위원회(이하 '공간위'라 한다)에게 일상적인 관리·운영을 위임한다.

- ② 공간위는 공간위 회칙에 따라 일상적인 관리·운영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.
- ③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원팀과 공간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6조 (공간의 배정)

- ① '배정'이란, 특정 단체가 신학생회관 내의 특정 공간(단, 상담 센터와 상업 공간은 제외한다)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배정에 따른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2년마다 재심사하여 배정한다.
- ③ 배정은 공간위에서 담당하며,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원팀과 공간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④ 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간위 회칙에서 정하며 배정 상황에 변동이 생길 시에는 학생 지원팀에 보고한다.

제7조 (공간의 사용신청 및 허가)

- ① '사용신청 및 허가'란 제6조의 '배정'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사용신청 및 허가는 공간위에서 담당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원팀과 공간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사용신청 및 허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간위 회칙에서 정한다.

제8조 (사용의 제한) 공간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.

- 1. 정치·종교적인 행사(단,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고 외부인의 참석이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간위 회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)
- 2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행위(단, 공간위가 그 당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지 원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)
- 3.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- 4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5. 기타 공간위 회칙에서 부적당하다고 정하는 경우

제9조 (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) 공간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이 준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

- 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3.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
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- 5. 제8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

제10조 (사용자의 준수사항)

- ① 사용자는 신학생회관 내 모든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,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 야 한다.
- ③ 각종 홍보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으로 제한하며 임의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다. 단, 행사에 꼭 필요한 부착물은 공간위와 협의를 거친 후 부착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용료)

- ① 배정 및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지원팀 과 공간위 간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1조 (개정)

이 준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원팀과 공간위 간의 회의를 소집하며, 양자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개정한다.

제12조 (기타 학생자치문화공간)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문화공간의 경우에도 공간위에게 일상적 인 관리·운영을 위임하며, 이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1. 태울관 내 미래홀